

부부 공동명의 변경 안내문

원종 휴먼빌 클라츠

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나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제4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중 LH의 동의를 받을 경우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오니, 진행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부부 공동명의 변경 안내

일 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6년 2월 24일(화) 오전 10시 ~ 16시 00분(점심시간 12~13시 제외) • 사전예약 기간: 2026년 1월 30일(금) 오후 13시 00분 ~ 2월 23일(월) 18시 00분 까지 ※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 공급계약서 당일 불출 불가: 사업주체 날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매 동의 접수 및 발급 ※ 부부 공동명의 변경만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(제3자와 공동명의 변경 불가) ※ 사전예약 기간 내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 기간에 공동명의 진행이 불가합니다. ※ 상기 명시된 기간 외에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 진행이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. 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종 휴먼빌 클라츠의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. •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 73조 제4항 각호의 경우 전매 제한기간에도 전매행위가 가능하며, 동법 제73조 제4항 7호 (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부부에게 증여하는 경우)에 의한 명의변경입니다. 		
장 소	일신건영(주) 본사 3층 (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길 11, 3층(성내동))		
예약방법	일신건영(주) 홈페이지 내 온라인 예약		
문의처	금융권 서류 문의	국민은행 원종동지점 박미선 팀장, 이지영 대리	☎ (032) 671-6183
	기타 문의	당사 고객센터	☎ (02) 480-3100 > 1번

부부 공동명의 변경 절차 및 서류

순서 및 절차	주요내용	구비서류	
		양도인(증여인)	양수인(수증인)
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(계약자 진행)	※ 부부 공동명의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(원본 1부) ※ 양도인(증여인), 양수인(수증인) - (분양권) 증여계약서 작성 후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방문하여 검인 (본관 4층 창구) ☎ 032-625-7122 ※ 지자체 검인, 거래지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.	1. 증여계약서 2. 공급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(아파트, 발코니 확장 계약서) 3. 신분증 4. 인감도장	1. 신분증 2. 인감도장 3.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)
② 국민은행 원종동지점 (방문)	※ 중도금대출을 받은 세대는 국민은행 원종동지점에 서류 확인 후 계약자 및 배우자가 방문하여 발급받음 ※ 대리인 불가	1. 주민등록등본 1부, 2. 주민등록초본(본인 및 세대원 전원) 각 1부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 4. 개인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5. 인감도장 · 신분증 6. 증여계약서 7. 공급계약서 원본 (아파트, 발코니 확장 계약서, 유상옵션계약서)	
③ 사전심사 및 전매동의서 제출 (당사 방문)	1. 양도인(증여인), 양수인(수증인) 방문 [양도인(증여인) 대리인 신청 불가] 2. 전매 관련 구비서류 제출 3. 분양권 전매동의신청서 작성 4. 권리의무승계 내역서 기재 및 날인	1. 공급계약서 원본 2. 검인된 증여계약서 원본 1부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 4. 분양권 전매동의신청서 [당사 서류 비치] 5. 주민등록표등본 2부 6.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[본인발급용 / 매수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] 7. 인감도장, 신분증	[공동서류] 1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[본인발급용] 2. 인감도장, 신분증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 [부부 분리세대 추가서류] 4. 주민등록표등본 2부 [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] 5.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[위임용] 6. 대리인의 신분증
④ 전매동의서 신청 및 발급	※ 신청자: 사업주체(당사)에서 신청 접수처: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	※ 접수일로부터 약 14일 이후 동의여부 결정 통보	
⑤ 계약서 수령	※ 전매동의서 발급 및 계약서 불출 - 수령일자 개별 통보 예정	※ 계약서 보관증, 수령자의 신분증 - 공급계약서 대리인 수령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만 가능	